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본부 등의 명성신용 훼손 위험 관리 의무 부과〉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19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리방안 마련 의무 부과	2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7
3.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추가 및 손해배상의무 명시	1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6.
- (3)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하락 및 고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5조의6 신설, 제37조의2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관리방안 마련 의무 부과

□ 개정안은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내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5조의6 신설), 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생략) 라. ~ 아. (생략) <신설> <신설> 11.·1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자. (생략) 차. 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안 11.·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가맹본부 등의 명성· 신용 훼손 위험 관리 의무) ①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현행	개정안
	<u>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대표자, 임원 및 지배주주에 대한 윤리교육</u> <u>2. 명성이나 신용 훼손 상황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u> <u>③ 관리방안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 현행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사실을 수록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대표자, 임원 및 지배주주에 대한 윤리교육, 명성이나 신용 훼손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내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 스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관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개정안은 관리방안 마련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방안을 정보공개서 수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의무 불이행 시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²⁾

□ 다만, 현행법 제3조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되, 정보공개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할 가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맹본부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본부는 관리방안 마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2024년 기준 업종별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 현황>

(단위: 개, %)

가맹점수	외식		도소매		서비스		합계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100개이상	314	3.2	43	7.5	138	7.1	495	4.0
10개~99개	2,199	22.3	152	26.6	534	27.6	2,885	23.3
10개 미만	7,360	74.5	376	65.8	1,261	65.2	8,997	72.7
합계	9,873	100.0	571	100.0	1,933	100.0	12,377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가맹사업현황 통계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오너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너리스크에 따른 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오너리스크는 주로 대형 가맹본부에서 문제되고, 소규모 본부에의 적용은 추가적 부담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법 위반사실을 확대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을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다. ----- ----- ----- ----- <u>같다) 또는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u> -----
1) <u>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u>	1) <u>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u>

현행	개정안
<u>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u> 2)·3) (생략) 라. ~ 아. (생략) <u><신설></u>	<u>제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u> 2)·3) (현행과 같음) 라. ~ 아. (현행과 같음) 자. <u>최근 5년간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u>

□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그 임원⁴⁾이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②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③ 해당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2조제10호다목은 법 위반 사실의 기재 대상을 가맹본부의 지배주주⁵⁾, 최근 5년 이내의 위반사항으로 확대하며, 기재 대상이 되는 법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관련 규정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적용 대상	가맹본부, 임원	가맹본부, 임원, <u>지배주주</u>	다목
대상 기간	-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으로 규정) ⁶⁾	<u>최근 5년 이내</u>	
기재 내용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법을 위반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 관련) -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형을 선고받은 사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u>중대재해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사실</u>	
추가 기재 사실	-	<u>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실</u>	자목

5)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배주주의 사기·횡령·배임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는 가맹희망자의 창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가맹본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법 위반 사실의 기재 대상 기간에 대하여, 현재는 법률에 별도의 기준 없이 시행령에서 ‘최근 3년동안’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최근 5년 이내’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추가되는 법률의 위반 사실은 그 중요성이 가맹사업의 업종별로 다를 것이나,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은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다양한 업종의 정보공개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프랜차이즈 업종 구분>

업종	세부업종	브랜드수 (가맹본부수)
외식업 (15개)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	9,873 (6,875)
도소매업 (7개)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571 (523)
서비스업 (22개)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유아 관련,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1,933 (1,57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가맹사업현황 통계 발표)

□ 한편, 개정안 제2조제10호자목은 가맹본부 등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리스크 관련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창업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추가사항 중 가맹점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외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추가 및 손해배상의무 명시

□ 개정안은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① 가맹계약서에 배상기준, 배상절차 및 배상방법 추가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제11호), ② 손해배상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및 제3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u>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u> <u>의무에 관한 사항</u> 12. · 13. (생략) ③ (생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가맹본부의 대표자, 임원 또는 지배주주</u> ----- ----- ----- ----- ----- <u>배상기준, 배상절차 및 배상방법 등</u> ----- 12.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u>

현행	개정안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u>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 ----- ----- -----.

- ☐ 현행법 제11조제2항제11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동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1조제2항제11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임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음.
- 동 규정으로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임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⁷⁾

<표준가맹계약서⁸⁾ 내용 중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47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지만, 가맹본부 임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7)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본부 측에서 책임진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 10. 8.)

8) 예시로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손해배상 부분 발췌함.

○ 또한, 동 법은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대표자,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기준, 배상절차 및 배상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안 제11조 제2항제11호),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안 제37조의2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록의 송부, 손해액 인정 제도⁹⁾를 적용하려는 것(안 제37조의2제5항)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경영 전반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지배주주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에 따르면,¹⁰⁾ 이사, 대

9)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0)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 기업결합 신고가이드북 p.132 임원의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함. 이때 ‘이에 준하는 자’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사회

표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 역시 임원에 해당함.

○ 또한, 안 제37조의2제4항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동의하나,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계약으로, 지배주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서 기재사항과 손해배상의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또한, 비등기 임원(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관리·기획관리 등의 특정분야 업무에 종사할 뿐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